

# 법학전문대학원 자체평가위원회 등 운영규정

제 1 조 (목적) 본 규정(이하 “규정”이라한다)은 법학전문대학원 자체평가 시스템의 기획, 개발 및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이원적 운영시스템) 본 대학원의 자체평가 추진시스템은 대학 전체의 자체평가 체제를 기본으로 하여 자체평가기획 위원회의 조직적 역할 하에 자체평가연구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원적 시스템으로 구축한다.

제 3 조 (구성)

- ① 자체평가기획위원회 : 자체평가기획위원회는 부총장을 위원장으로, 처장급 이상의 보직교수 및 평가기획관련 담당교수 등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자체평가연구위원회 : 자체평가연구위원회는 본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평가영역별로 전문성 있는 본 대학원 교수 등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자체평가연구지원팀 등 : 자체평가연구위원회 위원장은 자체평가연구위원회의 원활한 연구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본 대학원 행정실무자와 연구조교로 구성된 연구지원팀 및 교내외 평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자문팀을 구성할 수 있다.

제 4 조 (기능)

- ① 자체평가기획위원회 : 자체평가기획위원회는 본 대학원 자체평가를 위한 총괄적인 감독과 조정을 하며, 자체평가의 기본방향과 전략을 수립하고, 자체평가연구비를 확보하여 자체평가연구위원회가 자체평가연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.
- ② 자체평가연구위원회 : 자체평가연구위원회는 자체평가기획위원회가 설정한 평가일정에 맞추어 평가절차 및 집필계획을 수립하고, 기존 평가자료의 검토&#8228;평가자료 수집 및 조사 등을 거쳐 자체평가연구를 수행하도록 한다.

제 5 조 (자체평가 계획의 수립 및 시행)

- ① 자체평가기획위원장은 본 대학원개원 후 3년차까지는 매 학년 종료 시마다, 4년차 이후는 매 2학년 종료 시마다, 또한 필요시에는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하여 본 대학원 운영의 각 분야에 대한 자체평가와 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.
- ② 자체평가연구위원회는 평가가 종료된 후 각 영역별 평가연구보고서 1차(안)을 보고한 후 검토 및 수정을 거쳐 최종보고서를 자체평가기획위원회에 보고한다.
- ③ 자체평가기획위원회는 자체평가연구위원회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본 대학원 운영의 미비점 및 보완점 등을 망라한 백서를 발행하여 본 대학원의 향후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제 6 조 (임기) 각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 본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